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평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498 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2일 발 의 자 : 김평남 의원(1명)

찬 성 자: 전석기·박순규·김기덕·김화숙·

이병도·임종국·김경영·김경우· 김정태·최웅식·김제리·이태성·

홍성룡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○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제는 성인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에게도 투표권 이 부여되었음.

- 하지만,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업의 초점이 대학교 입시를 위한 교육에 치우쳐져 있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선거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교육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.
- 이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소중한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선거에 관한 교 육과 투표권 행사를 위한 공약 및 선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 게 비교·분석, 토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학교민주시민 교육에 선거의 의미와 기능, 선거법의 이해 및 공약의 비교·분석, 토론 등 선거 전반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자 함(안 제5조제6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교육기본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공직선거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선거의 의미·기능,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, 공약의 비교·분석 및 토론 등 선거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)	제5조(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)
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	
음 각 호와 같다.	·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6. 선거의 의미·기능, 선거법 및
	선거제도의 이해, 공약의 비
	교·분석 및 토론 등 선거법령
	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
	<u> </u>